

[별표 8의2] <개정 2011.4.6>

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 인력(제36조제4항 관련)

1. 토목용·조경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穿孔機):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Loader):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의 트럭 1대 이상

마.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2. 건축용·공예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가. 천공기: 무한궤도식인 것 1대 이상

나. 굴삭기: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다. 로우더: 바켓용량이 0.7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1대 이상

라. 운반장비: 15톤 이상인 트럭 1대 이상

마. 석재절단기: 1대 이상[분당 0.8세제곱미터 이상, 와이어소(Wire-saw) 또는 젯버너(Zet-burner)]

바. 기술인력: 굴삭기·로우더 및 운반장비에 대한 각각의 운전 또는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3. 쇄골재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골재채취법」에 따른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춘 자

※ 비 고

1.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같은 법에 따라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2. 장비는 자기소유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신청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용 또는 공예용 채석을 하는 경우로서 무동력도구(엔진·기관·공기압축기 등 기계적 동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도구를 말한다)만을 이용하여 석재의 굴취·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이 법 제25조제5항제1호 단서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신청한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가진 자와 석재의 굴취·채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